

제439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3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8)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0)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9)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3)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3)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8)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2)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1)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8)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3)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0)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9)
18.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상정된 안건

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4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8)	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4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0)	4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9)	4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4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3)	4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4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3)	4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4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8)	4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2)	4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1)	4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8)	4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3)	4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0)	4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9)	4
18.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4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측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노종면 위원님부터 쪽.

○**노종면 위원** 우리 소위가 생산적으로 좋은 법을 적기에 개정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 여야 정쟁 없이, 진짜 현장에 필요한 법안들이 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소위원장님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존경하는 덕망 높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잘한다는 얘기는 법안심사소위 잘한다는 말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최민희 위원님 잠깐 인사, 여기 돌아가면서 하고……

○**최민희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장님 모시고 법안의 자구 하나 수정하는 것이 현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법안으로 저희가 잘 제정하고 개정해서 문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익히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오늘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들이 단순히 향유라든지 즐길 거리 이런 것들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민생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법안심사 열심히 할 거고요. 또 많은 법안들을 심사해서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예술인들, 체육인들이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소위원장으로서 저도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8)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2)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0)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9)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7)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3)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3)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9)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8)
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2)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1)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8)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3)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0)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9)
18.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10시06분)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한 안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2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 두 건은 문학진흥기본계획과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에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인프라’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말 용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도 정비 대상 법률용어로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필요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은 외래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공언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전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는데요, 소위원님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까.

○노종면 위원 노종면 위원입니다.

인프라가 지금 적시돼 있는 제5조에서 인프라에 혹시 무형의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기반시설로 하는 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이용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주로 물리적인 시설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그런 무형적인 부분은 정책적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정부 측 동의가 있었고 지금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렇게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앞으로 심의할 내용에 동일 제명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심사 대상 법안이 총 5건입니다.

2·5번 김윤덕 의원님 안과 박정하 의원님 안이 방송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특례 규정으로 유사한 사항이고 3·4항 이성운 의원님 안과 김재원 의원님 안이 기금 용도의 사용 확대를 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사항인데요, 영화·비디오물업자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김승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현행법에서 9인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될 수 없도록 하

고 있는 규정 그리고 비디오물영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그리고 영화업자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를 위반해서 벌칙·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면직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삭제로 우려되는 사항들을 보완하시려는 조치들입니다.

이렇게 삭제하신 취지는 일단 비디오물영업자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업자보다 특별히 더 강하게 규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고 이 영화업자를 3인 이상 하거나 직접 관련된 소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위원회에 반영하는 데 오히려 제약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고 심사자료 4쪽에 보시면 이런 것을 삭제하시면서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조항 부분을 보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나 사항, 심사자료 5쪽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성윤 의원님과 김재원 의원님께서 다 내신 안인데 이성윤 의원님 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건만 있고 김재원 의원님께서서는 더 포괄해서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까지 기금 용도로 추가하려는 안입니다.

오른쪽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법상 기금의 용도가 죽 나열돼 있는데요, 그 사용처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용도로 기금 용도를 추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심사자료 7쪽에 보시면 현재 문체부에서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이나 영화 국제 공동제작 시범사업을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이 법률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이나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화해 주면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좀 더 두터워질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심사사항입니다.

심사자료 8쪽입니다.

방송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특례 규정인데요. 김운덕 의원님과 박정하 의원님께서 각각 유사한 내용으로 내셨습니다.

방송법 심의를 마친 방송광고와 내용이 동일한 광고영화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박정하 의원님께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가 제한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안은 전체적으로 방송광고 및 광고영화에 대한 중복 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들이고요. 이게 두 안이 워딩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표상에서 보는 것처럼 김윤덕 의원님 안에서는 ‘동일한 내용’ 이렇게 있고 박정하 의원님 안에서는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있어서 방송광고와 광고영화는 상영되는 공간의 차이로 내용적 동일성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정하 의원님 규정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심의받아야 되는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서 박정하 의원님 안을 주로 해서 수정의견으로 하되 박정하 의원님 안 중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광고가 제한되는 업종’이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그 표현 자체는 방송광고 자체가 금지된 업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것은 이미 이 내용이면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서 명확성의 제고를 위해서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업종’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포함시켜서 제시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부칙이 없는데요. 이게 등급분류를 신청해 놓고 신청 처리 중인 건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 적용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수정안에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쪽 가입니다.

영화·비디오물업자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정안은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영화·비디오물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영진위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전부 수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 나번,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등의 사항 추가 이 개정안 역시 영화·비디오영상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 다, 방송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특례 규정 이 개정안은 영화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유사·중복되는 조항 등 통합 조정이 필요하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까.

○윤용근 위원 윤용근 위원입니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9인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윤용근 위원 현재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우선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과장 이영민 문체부 콘텐츠산업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현재 구성은 영화감독, 학계 그리고 투자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래서 영화업자 3인이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과장 이영민** 현재는 3인 이상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이상이면 2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과장 이영민** 예, 맞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영화업자 2인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과장 이영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삭제하게 되면 영화업자만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텐데 저희 문체부랑 영진위랑 그것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할 겁니다.

○**윤용근 위원** 저는 이거 삭제를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현장의 목소리 반영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3인 정도면 적절한 규제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다 완전히 삭제해서 만약에 영화업자 9명으로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곳인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인원수 조정을 한다면 그 부분은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디오물영업자를 아예 포함 안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조항 삭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17조 2항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7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필요한 규정 아닌가요? 만약에 이걸 삭제해 버리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을 우리가 길을 열어 주는 게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소위원회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민희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최민희 위원** 저런 논리라면 영화인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 과거에 감독도 들어가고 제작자도 들어가고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변호사하고 교수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서 이번에 아마 기준을 좀 넓혀 보려고 하는 시도 같은데.

그러니까 비디오물 관련해서 관련자가 들어가면 넷플릭스가 해당되나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OTT 사업자가 비디오물 관련해서 업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넷플릭스 관계자를 거기다 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범위는 열어 둔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격정의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윤 위원님, 사실 소위원회가 진짜로 실무 결정을 하는데인데 거기에 현장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심의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래서 이해충돌 규정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이해충돌이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그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나면 대부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영화투자사나 영화업, 영화 제작사나 다 법인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 충돌은 법인의 주주이거나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그런 경우가 충돌이 더 발생하지 본인이나 친족관계인 사람하고 충돌 관계가 발생하는 거는 현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충돌 관계를 예방, 규정을 신설하고 전부 오픈을 하게 된다면 대·중소 상생법에도 보면 법인의, 주주의 몇 퍼센트, 주식을 몇 프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임직원이나 이런 경우는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이해관계 충돌은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해충돌 규정을 수정해서 넣거나 아니면 100% 삭제하는 것을 조금 제한을 두거나 저는 뭔가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실은 과거에 좀 폐쇄적으로 운영된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만으로 영화진흥위원회를 할 수 없는 생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OTT 사업자에 대하여 영화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이런 거에는 또 OTT 사업자는 맞고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전부 수용 입장인데 진짜 이해충돌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완벽하게 100% 차단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 규정도 규정이지만 구성할 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최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혹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이게 운용될 때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상에 거기다가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종면 위원** 노종면 위원입니다.

지금 윤용근 위원님 지적이 명확하게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업자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단서를 삭제하면 영화업자들의 비중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걸 우려하니까 우리가 잘 조율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자가 많이 늘어나게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 조정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영화업자를 좀 비중을 늘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진흥도 필요하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막아 놓지는 않겠다는……

○노종면 위원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던 이 법제가 작동을 의미 있게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화업자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도이지 이걸 열어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가능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입장이 막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영화업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는 3인까지만, 최대 3인으로 한다면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특정 직역이 4인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바꾸고 다만 비디오물업자는 OTT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데……

○노종면 위원 그거는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거는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위원 그리고 이해충돌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이해충돌도 2항을 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어떤 걸……

○노종면 위원 이 없애는 것의 어떤 점이 공감이 돼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게 합리적인 문구로 보이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해충돌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

○노종면 위원 그런데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과의 관계를, 17조 2항이요. 그리고 이거를 그 앞의 조문 13조에다가 호를 만들어서 ‘본인 또는 친족관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과의 관계성 이거는 이 3호로는 예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17조 2항을 빼려는지 그것부터 설명이 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거는 아까 최민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그 소위원회에 현장감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 업 자체를, 종사하는 사람을 다 배제하면 그러면 결국은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심의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열어 놓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심의하는 게 좋다는 취지였습니다.

○노종면 위원 여기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해당 분야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게 너무 과해서 그거는……

○김재원 위원 한편 지금 영진위 같은 경우에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업자 이런 분들이, 비디오물영업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풀이 9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학계나 아니면 법조계 쪽의 위원들을 선임한 것은 그만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조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분들의 풀이 나중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9명밖에 안 되는 것을 지금 영화업자 같은 경우에는 3인 이상 포함되어서

는 아니 된다. 영화업자 3인 이상이 아니라 이거를 수를 올린다고 그래도 4명, 5명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넷으로 비디오물영업자 그다음에 법조계, 학계 그다음에 현장 또 다른 단위 이렇게 해서 포함이 돼야 될 텐데 그걸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인수를 늘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영진위 구성 자체가, 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직역이 4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배현진 위원 제가 잠시 의사진행……

○소위원장 이정문 예.

○배현진 위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시다 보니까 위원장님 발언 순서를 득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 문제가 위원 자격 제한 규정이 매년 국감 때마다 영진위가 이를테면 지원 심사 같은 것을 할 때 내부 복마전이 있었다라는 이런 거듭되는 문제 제기 때문에 이 법을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소위원회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래서 서울영화제나 이런 것들 다 페널티 가고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배현진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의 제안만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족관계 이런 거는 사실은 요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한 규정인 하거든요. 이외에 영진위원회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자격 제한 규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것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 규정이 있을 텐데요.

○배현진 위원 저희도 다 몰라서 한번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배현진 위원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은 영화업자라고 하면 제작·수입·배급·상영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외에 당장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자문역이든 고문역이든 그 관계된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현직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이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법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된 분들이 제한되는 규정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작업·배급업 이런 것들이 영화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게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하신 법안이긴 하지만 아까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최민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법안의 목적 있잖아요. 영진위 자체 위원들 내부의 어떤 일탈행위나 이해충돌을 미연에 차단하자라는 이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문체부가 저희에게 조금 더 상세한, 그냥 ‘취지에 공감함’ 이렇게 의견을 주실 게 아니라 이런이런 목적이므로,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도 대안을 더 제시하든가 상세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는 이 법안을 저희가 조금 더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보류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여기 김승수 의원님 안에서 보면 새로 추가한 게 아까 윤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본인 또는 친족관계라고 이렇게 제한돼 있는 부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법인이라는 게, 법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시를 해야 되고 조항 자체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 문제는, 이게 아까 전체는 9인이지만 또 소위는 숫자가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정연욱 위원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정책과장 이영민 소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단 이게 숫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 자체를 얼마로 한다는 게 약간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 제가 손을 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종면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 방송광고 관련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법상 영화 및 예고편 그리고 영화 전에 상영하는 광고도 영등위 등급심사받게 되어 있잖아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TV 등을 통해서 방송된 광고를 그대로 극장 등에서 상영하는 경우 이미 방심위 심의를 거쳤음에도 극장에서 상영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다시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친 모든 광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영등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나 광고 중에서도 또 특히 주류 광고, 대부업 광고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그리고 광고 등은 영등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하므로 이 점이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상영등급분류를 특례 규정 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

○임오경 위원 그래서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중규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수정 보완했던 이성운 의원님하고 김재원 의원님 건데, 저희가 지금 국내 공동제작 관련해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공동제작 지원이 좀 미흡한 상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정부의 수정의견을 봤더니 여기다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및 국내’, ‘국내’를 좀 넣어 주시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국제 공동제작 그러면 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공동 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공동제작 지원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자구를 정확하게 해서 ‘국제 및 국내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국제 공동제작 하면……

○임오경 위원 국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아니, 글로벌…… 지금 저희가 해외 영상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자구를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국제 및 국내 공동 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가 보기에는 국제 공동제작으로 해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임오경 위원 다 포함이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제작이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제작이나.

○임오경 위원 국제라고만 돼 있으니까 국제 공동제작으로만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도 공동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지 않나라고 해서,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정연욱 위원 말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소위원장 이정문 일단 가항 관련해서는 그러면 추가논의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논의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아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큰 헤드라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거가 앞의 부분이고요.

○정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서 영화발전기금을 쓰는데 국내 영화업자들이 국내에서 촬영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국내 촬영으로 그러니까 국내를 로케이션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아마 임오경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오경 위원님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공동제작……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 국제가 아니고요, 국내 영화업자들도 국내 로케이션을, 지

역이나 여러 군데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영발기금에서는 따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내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예산영화,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하자는 취지로 얘기하신 건데 거기다 또 국제를 붙여 버리면 이게 말이 엉킨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답변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이정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법을 발의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제 공동제작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나 하면 지금 우리 콘텐츠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국제, 해외의 투자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인도의 경우를 보면 그 나라에 가서 촬영을 했었을 때 제작사가 어느 나라 제작사이건 간에 35% 정도를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더 협력 구조를 가지고 뻗어나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국내 지원은 지금 다른 카테고리에서, 여러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으니 국제 협력에 관한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러한 역량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입법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혹시 정부 측 추가 답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안은 김재원 의원님안대로 또 정부 측 수정의견 안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1, 2, 3, 4항을 순서대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논의 순서를 좀 지정해 주시면 위원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4항부터 하고 3항은 다시 논의하실 겁니까?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일단 논의를 하는 시간이니깐요.

○최민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한 대로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오늘 여러 안이 있는데 순서상 위원님들이 이 내용 저 내용도 질의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편의상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가항은 추가논의하기로 했고 나항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정의견대로 결정하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다른 조항이 완성이 되면 같이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광고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특례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저는 간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 경우는 방송광고 시간에 제한을 받는 업종으로 수정하면…… 네 번째 안건 말하시

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재원 위원 수정의견대로입니다.

○최민희 위원 예, 수정의견대로 하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수정의견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수정의견대로 하는 데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계속 심사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은 동일 제명의 안건 심사가 현재 있기 때문에 끝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위다 보니까 저도 좀 익숙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같이 봐 주시면요, 이 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작권법상에서 저작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쪽 규율하고 있는데 그게 25조부터 83조까지 있는데 25조의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서 저작물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조항들이 25조에 쪽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거를 이후의 도서관이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대한 이용 보상금 이거에서 다 준용하도록 돼 있는 법률 규정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25조를 물고 들어왔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저작권법상에서 보상금 수령단체를 정하고 있는데요.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요건에 대한민국 내의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이렇게 지정요건이 있어서 각 보상금 종류별로 보상금 수령단체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보상금 수령단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을 보상금 수령단체로 포함하려고 하니 현재 법안에 있는 지정요건에 대한민국 내의 보상권리자의 구성단체 이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 배제하는 규정을 같이 추가하면서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동안에 보상금 수령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지적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보상금 수령단체를 다변화하면 기존의 보상금 수령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제안을 하신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저작권법상에서, 6페이지를 보시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참고하면 보상금 수령단체

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의견에는 이게 인용 조문에 정확한 인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만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공공기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여태까지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저작권위원회도 해 봤고 또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서 단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스스로도 지적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저작권 보상 수령단체들의 문제점이 사실은 그 단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달라지고 저작권 권리자들의 단체가 한다고 달라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는 뭐냐 하면 저작권 보상금 수령을 한 이후에 5년 또는 10년 그 이내에 배분되지 않는 자금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거는, 특정 단체를 좀 말씀드리야겠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같은 경우는 예컨대 친인척, 육촌하고 관련된 업체랑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자녀학자금이나 식대나 통신비 같은 각종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어떤 분야는 저작권 권리자 단체로만 구성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단체를 계속 지정할 수밖에 없어서 차라리 저작권위원회 같은 공공기관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예컨대 뉴스 저작권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 대행을 언론재단에서 하듯이 그런 것이 생각의 단초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분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공연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5년의 기한이 도래했었을 때에 협회의 지도부급에 있는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대충 의결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문제가 한국문학저작권협회가 같은 곳이었고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같은 곳에서는 분배해야 할 저작권을 아예 분배를 하지도 않았습시다.

예를 들자면 한강 작가 같은 경우인데요,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한강 작가를 분배금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신탁단체들을 만나 본 결과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수령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흡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령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미분배 수령금, 보상금을 통한 자기네들의 호위호식 하는 데 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미흡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또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러나 창작자들의 제때제때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어떤 공신력 있는 곳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다 할 수 없도록 막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기간 동안에는, 어떤 마땅한 단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성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또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위원님들?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저도 공감하는데 차관님께 질문할게요.

이러한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러니까 저작권 권리자로만 구성된 단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은 좀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뒤에 7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저작권협회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가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협회의 권리가 침해받을까 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 기관들하고도 충분한 정부 측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법안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통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공감하지만 그래도 반대 기관들하고도 정부 측에서는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최민희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건 아니고? 그러면 동의는 하시지만……

○최민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게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하고는 의결이 되더라도 충분한 소통이나 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용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사실은 아까 미분배 보상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아마 창작자 단체들 입장에서 불안한 건 뭐냐 하면 공공기관으로 해서 다 자기들의 권리가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분배에 있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분배 보상금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정부 측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저는 그것이 창작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사용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멸시효가 지나 버리거나 또 그 자체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쌓아 두는 게 의미가 큰가,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제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걸 합리적으로 해서 최대한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이 법안은 미분배 보상금하고……

○윤용근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이 시작점이 거기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민희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이 안건은, 미분배 보상금 문제는 정부가 심도 있는 대안을 좀 더 고민해 봐라 그 의견을 달고요. 그런데 이 정도를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맞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내용은 통과를 하되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또 정부 측에서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한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3건의 심사안이요. 김재원 의원님 안이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승래 의원님 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한 것이어서 소위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사자료 3쪽,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 인증 폐지와 관련된 김성원 의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또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조치 의무를 면제하려는 안입니다.

전체이용가 게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핸드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수단 확보가 어려운 청소년의 전체이용가 게임 이용이 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내셨고 그다음 게임시간 선택제와 같은 이게 그렇게 현장에서 이용 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제도여서 좀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4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게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와 관련되는 조항상에서의 수정 부분들인데요.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어떤 전체적인 법적 효용성을 혹시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좀 저하될 우려가 없는 건지, 그래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더라도 개정안

처럼 삭제할 경우에 청소년 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자의 과몰입 예방 의무 이행 차질이나 어떤 강제적 섣다운제 폐지 당시에 자율 규제 형태로 이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항의 취지가 좀 훼손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조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관리 강화 건인데요. 이거는 조승래 의원님과 김재원 의원님이 같이 내신 건이고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관리 강화와 관련된 국내 법인의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자료 제출 의무, 지정 의무 위반 시·제재 지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들을 다 신설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유사 동일합니다.

다만 김재원 의원님 안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조항이 조금 더 추가돼 있고요. 가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지정 의무나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과 관련해서 안 지켰을 경우에 문화체육부가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정명령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제재를 줄 건가와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님은 영업정지 등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개정안에 들어와 있고, 조승래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서비스의 차단 등을 통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형식적인 지정과 운영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낸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새로운 제도로 도입들이고 이게 기존의 과태료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잘 안 됐었는데 정보통신망 정지·제한 및 영업정지 제재 수단을 추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법안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은 정부 부처와 문체부와 같이 조문 조문별로 보면서 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김재원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담되 조승래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조문의 위치가 조금 달리 있는 상황 이런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제기술적으로 조문 정리를 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것은 말씀드렸듯이 지정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영업정지로 하는 것이 해외게임사의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조승래 의원님 안처럼 정보통신망 취급 거부 형태로 제재를 하는 걸로 수정의견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건인데요. 이 경우에도 지금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하도록 하고 이걸 안 한 경우에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인데 지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게임사 부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등을 통해서 실효적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관련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승래 의원님 안으로 동의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3쪽 가,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 인증 폐지 등입니다.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의 게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관리 강화입니다.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게임사의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유사 중복되는 조항은 통합 조정이 필요해서 전문의원실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25쪽 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게임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외게임사의 법률 준수를 유도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전부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안전도 지금 한 세 가지 안전이 있으니까 논의의 편의상 가 번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 번, 다 번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 인증 폐지 등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 저는 이 게임산업진흥법 관련은 어차피 병합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게임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산업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나 업계의 공감대는 이미 확립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먼저 이게 김성원 의원님 법안 자체가 제한 이유와 법조문이 충돌이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게임 이용내역 고지 의무도 면제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12조의3 제1항 4호 이거는 전체가 손을 대지 않았지요? 혹시나 문체부가 이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결국은 보면 저는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본인인증 의무 면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이라는 부분은 이게 주 대상이 아동, 청소년 주로 초등생 아마 이 부류일 겁니다. 메이플 스토리나 FC온라인, 테일즈런너 등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도 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이용가 등급이 장시간 이용이나 유료 결제 위험까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정연욱 위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22년, 4년 전에 강제적 섷다운제를 폐지할 때 당시에 청소년 게임과몰입에 대한 부분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 대체 수단으로 유지, 일원화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아마 이게 0.1%라는 시스템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만에 하나 3000건이라는 이 수요 자체, 이 제도 자체, 이 규정 자체가 하나 없어짐으로써 느끼는 하나의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유지해 버리면 아마 인력이 하나씩 추가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게임업계의 이런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안, 그중예부모님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정연욱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을 무조건 삭제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스템을 더 유지하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많은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의 선택권까지 당장 없앤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삭제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인증 의무 면제는 저는 수용한다고 보지만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도 게임시간선택제 이걸 어쨌든 본인의 선택권 아닙니까? 모두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분은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까지 모조리 없앤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이게 본인인증은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 시간선택제는 남겨 두고 본인인증은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던 걸 정연욱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셔서요. 저는 나머지, 조승래·김재원 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여기 특히 문체부가 수정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첫 번째, 김성원 의원님 안에 대해서만 지금 정연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법안을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 중독 예방이라는 충돌하는 가치가 2개가 다 담겨 있거든요. 분류를 해서 일부 수용으로 전체이용가에 대한 본인인증은 수용을 하되 아동들 게임 습관에 대한 최소한의 보루로 남겨 둔 중독 예방이나 과몰입 예방에 대한 이 부분은 보류하고 추후에 더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 논의를 하기 전에, 전부 수용 입장인 문체부에서 다음에 논의할 때 어떤 대책을 꼭 마련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 상태로 저희가 또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은 제 생각에는 다 합의는하신 것 같은데 게임 시간선택제는 남기고 본인인증제는 없애고, 의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재원 위원 전체이용가에 대해서……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 와서 논의를 해야지 똑같은 상황 오고 또 넘겨야 할 것 같은데……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선택제만 유지하면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과몰입 예방할 수 있고 또 유료 결제 전체이용가 게임 이런 데 있어서의 청소년들 피해, 거기에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 이런 것 다 막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그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본인인증제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게 나오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버지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이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것을 차라리 없애자 그러니까 전체이용가의 경우에는 그냥 청소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과몰입 상태를 없애는 법으로 더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기존에 있는 본인인증제 도입의 효용성이 없으니까 없애자는 것은 이해도 되고 동의가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실효성이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다른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선택제로 충분하냐는 질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시간선택제가 3000명이 이용해서 0.1%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남기자는 취지에서 저도 동의한 거거든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른, 과몰입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이용가가 되더라도 이용량과 이용요금이 고지됩니다. 부모님한테도 고지가 되고 본인한테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 그걸로 간접적으로 과몰입이 예방되는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이게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실효성 있게 과몰입을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들립니다.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보류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거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만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고 2항은 존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에 더 함께 논의하는 방법 2개가 있는데……

○최민희 위원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오경 위원 같이 가야지요.

○배현진 위원 저는 일부 수용으로 해서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일부 수용 의견도 있거든요?

최민희 위원님 혹시……

○최민희 위원 아니요, 저는 포함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차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1항 부분,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 면제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데 두 번째 항 관련해서 다음에 우리 부처에서도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요? 법안을 저희가 앞으로 많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모든 사안을 고려할 수는 없고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아마 업계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서도 전원이 이 부분은 효율성 문제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같이 판단할 부분은 최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두 번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음에 처리해도 큰 문제 안 생기면 전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꼭 굳이 오늘 처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업계의 요청까지 있었다면 한 일주일 연기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다양한 논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법안 논의를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할 테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또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논의할 안이 있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저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갈릴 때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이 갈릴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들 해 주시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배현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법안에 대해서 양당의 위원들 혹은 당이 같더라도 첨예하게 가치가 충돌하는 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찬반이 분명할 때 표결하자는 데는 위원님들의 다수가 동의하신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의 다수와—거의 전부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리고 정부의 의견이 사실상 동일한데 숙고하자는 이유로 표결을 하자는 것은 법안소위에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의사진행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립니다.

○**최민희 위원** 저도.

○**소위원장 이정문**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 표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저는 오히려 이 분위기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법안이 만장일치가 있으며…… 같은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잘 안 되고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 법안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취지가,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보면 게임시간 선택제가 무의미한 제도라고 하면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놓아줌으로써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아 보겠다는 이 이중적인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차관이 대답할 때 청소년 가입자 수의 0.1%가 게임시간을 선택해서 이게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이용가의 인증 절차를 없애자는 간편함은 추구하는데 게임시간 선택제를 둬으로써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차관은 게임시간 선택제도—이것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불합리하거나 실효성 낮은 규제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아까 0.1% 수준이다, 무의미하다는 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의미한 게임시간 선택제를 과몰입 예방용으로 두기로 하면서 간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표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정문**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일단 내용상으로 우리 회의 자료나 또 정부의 답변이 모순적이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장애 요소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났다는 점은 최민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그게 100%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나아가서 지금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없애는

데는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무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하자는 쪽으로 위원들하고 의견이 나왔고 차관께서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오늘 회의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쪽으로 해소됐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결론을 합의 처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민희 위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만약에 그 처리를 한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신 거고요.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제 의견까지 최민희 위원님께서 들으신 상태로 한 번 더 판단을 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배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 이견이면 합의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법을 다루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문화가 자칫 시간을 너무 끌게 되는 그런……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이게 또 지나치게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들을 끊고 해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최민희 위원님 말씀대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법안소위의 진행 문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가급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되 이것을 무조건 ‘우리는 표결은 안 합니다’라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한 주 보류하시고, 왜냐하면 합의 처리냐, 표결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첫 소위에서 그런 의견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보류하시면서 그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지요.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소위원장 이정문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 법안을 냈을 때 정부가 수용, 일부 수용, 수용 불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오는 것처럼 의원의 안에 정부가 의견을 가져온 것은 2개 다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사실 첫 번째는. 그런데 국회 상임위가 두 번째 안은 불가하다고 지금 저희가 거부안을 다시 정부에 제안을 했고 정부가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까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안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한 의원이 낸 안이라도 일부는 폐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체이용가의 본인인증제 폐지는 수용하되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저는 종합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저희가 오늘 이미 그런 공감대가 있기에 통과하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최민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데, 수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 얘기를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최민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민희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합의 처리할지 표결할지부터 표결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분위기를 볼 때 법안을 빨리 처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무조건 모든 것을 합의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저를 무시하고 그냥 합의로 보고 가실지 아니면 표결하실지를 표결해 주십시오.

○**윤용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윤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용근 위원** 저는 법안심사소위에서만큼은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여기서 통과가 되고 또 전체에서 통과가 되고 또 본회의에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해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24시간, 저는 그래서 그 24시간을 법안소위 심사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상임위에서 24시간을 쓴다면 협의가 안 될 게 뭐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해서 충분히 협의하는 모양과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저희가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번 보류를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논의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위원** 일주일 뒤에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일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표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은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항,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 저는 수용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에서 아까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재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수정안의 내용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님의 안은 정보통신망 차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제 안은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명령 시에는 그 대상이 국내에 소재해야 하나 해외게임사가 국내에 영업하는 시설이 없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로 하였습니다.

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에 무조건 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국내 로펌을 대상으로 그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같은 것들만 그냥 내고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꼭 법인사업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것은 쿠팡 사태에서 충격을 받은 여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국내에 소재해야 하는데 지금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의 내용은 해외게임사가 국내에 영업하는 시설이 없다면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해외게임사가 국내에 법인을 두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검토보고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여기 조승래 의원님 안에는 과태료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외게임사가 과태료 1000만 원 못 내서 영업정지 당하고 있겠어요? 이것 너무 약한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영업할 거예요, 과태료 1000만 원 내고.

그러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 이용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할 것과 그들의 민원을 들어 줄 것과 그다음에 국내법 준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는 국내에 대리인이 법인으로 꼭 다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0여 개에 불과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해외게임사가 한국에다가 다 둘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게임의 게임사들이 그런 실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국내에 법인대리인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 단계에서는 실효적인 방법인 망을 끊는, 취급 거부·정지를 하는 그걸 넣는 게 영업정지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망을 못 쓰게 하는 것과 영업정지와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영업을 못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느끼기에 영업정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훨씬 강력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게임사 팔십여 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팔십여 군데보다 더 많을 테지만 그것은 국내에 법인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없는 경우 팔십 군데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원석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원석입니다.

지금 국내 대리인은 현재 매출액 1조원 이상 그리고 일평균 다운로드수가 1000건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해외게임사에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게임사가 총 81개사라서 그 81개사가 국내 대리인을 현재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원 위원 국내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굉장히 약화가 되면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보호도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해외 게임, 중국 게임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오는 그런 게임들, 인터넷으로 혹은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게임들에 대해서 국내 게임사들, 영세한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라든지 아니면 보호망이 없고 해외 게임사들한테 너무 열어 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종면 위원 질문……

○소위원장 이정문 배현진 위원님 먼저……

김재원 위원님, 하셨나요?

○김재원 위원 예, 과태료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아까 배현진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배현진 위원 차관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 하나만……

지금 김재원 위원님의 지적이 너무 약소한 페널티 아니냐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요. 원래 전세계 게임 최강 국가를 손으로 꼽자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체들을 견제하는 중국이나 유럽권 여러 나라들 많은데 똑같이 비슷하게 지금 저희 업계에 진출에 대해서 하는 제재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해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진 위원 예, 해외에 다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중국 같은 나라는 판호 발급이라는 걸 통해서 한한령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정책화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임의적으로 저희들 걸 해 주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커다란 규제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 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소위원장 이정문 예, 최민희 위원님.

○최민희 위원 그 미국 업체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규제조항에 미국게임 업체도 해당되지요? 애당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관련 문제를 다룰 때 통상문제가 같이 섞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위원장님이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지금 김재원 위원님 안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영업정지 대상이 어디예요? 해외의 본사?

○김재원 위원 본사가 아니라 국내법, 국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재원 위원님의 영업정지는 게임사인데요.

○노종면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럴 경우에, 위원님 법안인데 제가 궁금해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 안 했을 때 국내에 대리인을 영업정지한다는 그런 논리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김재원 위원 예.

○노종면 위원 대리인이 없잖아요. 대리인을 지정을 안 한 것에 대한 문제점……

○김재원 위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지정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을 그냥 로펌 같은 데 위임을 지금까지는 해 왔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서비스와 민원처리가 가능한 법인으로 하라는 것이 이 법안의 원래 내용이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니까, 그걸 안 했으면 그 페널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김재원 위원 아니요, 페널티 대상은 그러니까 국내 대리인, 국내 서비스되는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차단 등으로 정지를 시키시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영업정지 명령

을 내리라는 것이고 결국은 결과는 같습니다.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요. 정보통신망을 차단해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과 영업정지와 그게 내용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제재를 당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법안은 국내 대리인이 로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로펌은 직접적인 국내 민원인들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게임을 해 봐서 아는데 이게 어디 이상한 구멍에 빠졌다, 오류가 있어서 그랬을 적에 바로 구제되는 경우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본사에 갔다 오려면 한참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서…… 또 아이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법률대리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서비스가.

○**노종면 위원** 예, 그러니까 국내 법인이 존재하고 국내 법인을 영업정지시킨다고 그러면 일단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국내 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김재원 위원** 예, 맞습니다. 국내 법인이 여기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돼 있는 게 같이 이 법안의 지금 내용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영업정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제가 법안을 잘 못 이해한 거 아는데……

○**김재원 위원** 이 법안 전체가 처음에 그 로펌 애들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그런 것이 아닌 본사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설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국내에 그러한 법인이 있었을 경우에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 또 제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회계자료를 내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영업정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김재원 위원** 예, 법안이 그렇게입니다.

○**노종면 위원** 자료에 지정의무 위반 시에 제재로 영업정지가 돼 있어서…… 제가 김재원 위원님 설명 듣고 이해를 했는데 차관님, 제가 이해 잘한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제가 조금 부연을……

○**노종면 위원** 지정의무를 위반해서 받는 페널티에는 영업정지가 제일 논리구조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의무사항들을 위배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하자라는 의견은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 수위가 맞는지……

○**김재원 위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정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민원과 서비스가 가능한 법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일반 로펌에다가 그것을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일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로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제재의무 위반 시라고 하는 거는 로펌의 대상이 되겠지요.

○**노종면 위원**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 안건도 지금 김재원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신데, 이것도 아까처럼

다음 호에 더 한번 논의할 건지 아니면 정부 측 수정안으로 그냥 하고 김재원 위원님 동의해 주실 건지 한번……

○**김재원 위원** 정부 측 안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부 측 수정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항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에서 전부 수용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수용하는 걸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의 두 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세 건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세 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과 관련해서 오늘은 12시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노종면 위원** 이게 두꺼운데요?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원하시면 더 할 수 있는데 혹시, 이석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회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하실 겁니까? 오늘 그냥 남은 시간에……

○**소위원장 이정문**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아마 오전 중에 끝나든 아니면 조금 점심 때까지 늘리든 해야 돼서……

○**배현진 위원** 예,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12시 정도까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대한 속도 높여 보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보고 안 드렸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 건은 영비법에 의한 등급분류제도, 음악영상물에 대해서 영비법에 있는 등급분류제도를 지금 현행 규정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영상물

에 대해서는 영비법이 아닌 음악산업진흥법에서만 별도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현행 영비법상의 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음악산업진흥법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산업진흥법에 음악영상물과 관련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현재 있는 영비법상의 관련 규정들이 또 정비되거나 새롭게 추가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두 법안은 병합 심사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심사를 하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음악산업진흥법과 영비법 각각 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조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체계의 안들을 제안하셔서 같이 병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먼저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사업자의 지정 건인데요. 이게 가, 나, 다 사항이 전체적으로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김승수 위원님, 그러니까 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건데요. 김승수 위원님 안은 아예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되는 선택지는 하지 않고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전국적으로 다 규율을 하는 걸로 그리고 등급 기준도 영비법상에 아예 준용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전체를 새롭게 규율하는 형태로 체계를 잡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와 벌칙 등을 다 그 체계에 맞춰서 규정하신 개정안이고요.

양문석 의원님 안은 지정업자에게 5년 간의 자격기준을 주고 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서 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용하시려고 하고 이후에 사후관리와 관련해도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연계되는 형식으로 규정안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의원님 안은 음악영상물에 대해서 자체등록업자가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영비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못 갖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원래의 영상물등급위원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서 이렇게 투웨이로 열고 계신 형태로 제도를 도입했고 대부분 영비법상의 등급제도와 관련해서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준용할 수 있는 체제로 규율을 하시고 이후에 사후관리와 관련되는 규정들도 그런 식으로 다 체계를 맞춰 놓은 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음악영상물등급심의절차의 신속성과 산업현장 대응성 제고 측면에서 음악산업진흥법에 기여하는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게임물, 비디오물 등 다른 콘텐츠의 경우에도 자체등급분류제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점도 아울러 감안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등급분류 선택 가능 여부,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린 점도 있지만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에 따른 인력·교육 부담 등을 감안해서 사업자가 자체분류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분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체부하고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임오경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안이 마련돼 있고요. 그 안에서 좀 법제 기술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했고, 등급분류에서 좀 배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 예외요건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의견에 좀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의

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5쪽부터 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9쪽입니다.

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인데요. 그래서 등급제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각 의원님별로 준수사항과 관련되는 조항들을 쪽 마련하고 계신데요.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기준, 배포·게시 전 영등위에 결과 통보 규정,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수료 규정, 영등위 자료 요청에 협조하는 규정,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세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수정의견에 공통 부분을 조정해서 넣어 뒀고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가. 사항에서 임오경 의원님 안에 등록제도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오경 의원님 안처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에 포함해 뒀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조문 대비표는 20쪽, 21쪽, 22쪽, 23쪽 그렇게 보시면 되고.

23쪽에서 다만 이게 등록제도로 갈 경우에 등록취소 규정도 아울러 필요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의견에 추가해 뒀습니다.

그리고 27쪽,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부분인데요. 이 사항도 먼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각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방식에 따라서 규율 방식을 좀 다르게 규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취지 같은 것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등위 등급조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어떤 제재 그리고 등급조정명령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이행조치 사항들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부분도 임오경 의원님 중심으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고. 다만 임오경 의원님 안 중에서 조문대비표가 28쪽부터 쪽 제안돼 있고요.

34쪽을 보시면 2항 부분에 임오경 의원님 안이 시정조치명령 이전에 한번에 사전단계로 시정권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측하고 저희가 상의해 봤을 때 조금 더 신속한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시정권고 규정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수정의견 안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 2항 삭제에 따라서 관련 조항들이 변경돼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배현진 위원** 수석님, 저희 위원들이 지금 이석을 해야 돼서, 의결정족수가 모자랄까 봐서 진행을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마지막 심사자료 40쪽입니다.

기타 관련 조항 정비 조항인데요. 여기도 영비법 준용규정 사항, 등급표시 의무사항, 수거·폐기 주체 관련, 불법 유통 방지에서 방통위를 포함하는 내용 그다음에 위임·위탁 대상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각 새롭게 들어가는 조항에 따른 벌칙, 과태료를 추가로 정리해서 내신 개정안인데 이 사항도 임오경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표 42쪽부터 51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연계된 사항이어서 영비법까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5쪽입니다.

음악영상물에 대해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음악산업진흥법에 이렇게 함에 따라서 현재 영비법의 음악영상물과 관련된 규정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승수 의원님 안과 양문석 의원님 안, 임오경 의원님 안 다 있는데 이

것도 그 앞부분을, 음악산업진흥법을 임오경 의원님 안과 같은 체제로 받아서 이 경우에도 임오경 의원님 안처럼 수정의견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사항에서 등급분류에 관한 법률 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그렇게 조문대비표가 58쪽부터 66쪽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입니다.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데 다만 전문의원실에서 사업자의 선택권과 음악영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19쪽, 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입니다.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관련 절차와 준수사항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사업자 관리의 실효성과 법 규정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서 안을 마련했으니까 수정안이 반영되도록 희망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다.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입니다.

사후관리체계를 통해서 부적정한 등급분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의원실에서 사후조치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안을 마련했으니 수정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40쪽, 기타 관련 조항 정비입니다.

이것은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의원실에서 법체계의 정합성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 안을 마련한바 수정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55쪽 2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6쪽, 가.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음악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개정안 중 유사·중복되는 조항 등 통합 조정이 필요하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정안이 반영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실까요?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영등위 등급 받기 전에 사전 통보 후에 유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법안 자구 수정을 하기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이 제도 자체를 원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백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부 측이 다 수정안에 동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결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 등 4건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보류했던 4건을 포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7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이 남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음에 언제 해요?

○소위원장 이정문 상정 자체를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영수 차관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원 노종면 배현진 윤용근 이정문 임오경 정연욱 정준호 최민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입법심의원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정책기획관 이준호
예술정책관 이용신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입시회의록